

팜플렛	
등록 번호	10000 15947
등·국회도서관·목	

제1회 공개토론회

성평등 침해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2005년 11월 4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 · 국회의원 유승희

지 려

▶ 프로그램 안내	3
▶ 발제 서울YMCA 여성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경과(김성희)	4
▶ 토론	
지역에서 보는 서울Y사태(송영한)	9
서울YMCA 소송경과와 사법부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망(정연순)	13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함영이)	16
서울YMCA 여성 참정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이다(황성기)	17
▶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20
국회 양성평등포럼 권고문	28
가처분 소송 판결문 1차	31
가처분 소송 판결문 2차	35
한국YMCA 전국대회 결의문	41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회 권고문	44
서울YMCA 100차 총회 결의문	45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여연, 민변, 참여연대, 여세연	46
한국YMCA 간사회 / 한국YMCA 실무자 성명서	50
서울YMCA 실무자 성명서	52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 성명서	57
2005년 1월 10일 기자간담회 / 2005년 2월 가처분 소송 기각 /	
2005년 2월 18일 102차 총회반대 / 2005년 2월 28일 총회 결과 /	
2005년 6월 28일 공공지원반대	
▶ 관련 보도기사 - 목록표	

프로그래밍

주 제 : 성평등 참여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주최 :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 · 국회의원 유승희
 사 입 : 이영자 / 카톨릭대학교 시인학과 교수

순 시 :

■ 발 제 서울YMCA 여성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경과
 김성희 /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 공동위원장
 한국YMCA 전국연맹 여성특위 위원

■ 토 론 남윤인순 /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송영한 / 구리YMCA 이사
 유승희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연순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조영호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함영이 / 우먼타임즈 취재부장
 황성기 / 한림대 법학과 교수

■ 종합 토론

<발제>

서울YMCA 여성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 경과

김 성 희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의 공동위원장, 전국Y 연맹 여성특위 위원>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는 1984년 제정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인준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의 참정권 및 사회적 지위 확대는 국가신인등급 기준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우리사회 곳곳에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까지 양성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실천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서울YMCA는 올해로 창립 102주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회원을 차별하는 대표적 민간단체로 우리사회 성평등 걸림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동안 서울YMCA는 조직과 사업 운영에서 주체인 회원들을 점차 소외시키는 한편 비민주적 조직운영과 프로그램 상업화로 인하여 시민사회 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잃어버린 데 대해 우리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회원 배제의 독점적 구조는 여성에 대한 철저한 성차별을 수반해 왔음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YMCA는 설립이념 및 헌장, 회원자격 그 어디에서도 성차별의 요소를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998년 독일 프레스덴 제14차 세계YMCA 대회에서 새로이 제정한 목적문 'Challenge 21 (도전 21)'의 정신에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청년과 여성들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모든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YMCA내에서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강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YMCA 여성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 경과

1) 여성회원 현황

2004년 현재 서울YMCA의 회원 4만여명 가운데 연회비를 내는 여성은 2만 5천여명으로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 (건비연, 시청자 운동, 청소년 상담실, 녹색가게, 여성합창단, 시민중계실, 건강한 소비자 모임, 청소년 자위활동 등)에서 자원봉사하는 여성은 90% 이상이다. 물론 이들 여성들은 총회의 투표권을 포함한 의사결정구조에 어떠한 참정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서울YMCA는 1967년 급증하는 여성회원들을 받아들이고자 총회원 자격에 관한 헌장의 일부 내용을 개정(남자에서 사람으로)하였고, 2003년 100차 총회에서는 여성 총회원권 인정을 전제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서울YMCA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여성회원 차별의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은 100여년 동안 지켜온 관습이라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나 제도는 국내외 YMCA 지회는 물론 세계 어느 민간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스러운 구시대의 잔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서울YMCA 총회원 자격이 있는 여성과 남성회원, 실무자들은 1989년 이후 여성회원 참정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 참정권 확보 운동 경과

1989년 서울YMCA 청년YMCA 회원 중심으로 여성참정권 요청
 2002년 12월 서울YMCA 개혁과 재건을 위한 회원바람회의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2002년 12월 회원서명, 여성기도회, 서울YMCA 이사 면담 등 수차례 집회
 2002년 12월 헌장 상 총회원 자격을 갖춘 여성회원 97명 총회원권 요청
 2003년 1월 헌장 상 총회원 자격을 갖춘 여성회원 13명 총회원권 요청
 2003년 2월 여성회원 배제 서울 YMCA 100차 총회 "여성, 남성이 함께하는 서울YMCA 결의문 채택"
 2003년 8월 서울YMCA 내 공식기구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윤동섭)
 (7차례 공식회의, 서울YMCA이사회 측에 참정권 실무추진 촉구 공문 발송)
 2004년 1월 총회원 자격을 갖춘 여성회원 75명 총회원권 요청
 2004년 1월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
 2004년 2월 여성회원 대표 서울YMCA 이사장 및 회장 면담 재촉구
 2004년 2월 이사회 "관계"고수, 남성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101차 총회원 명부 작성발표
 2004년 2월 서울지방법원에 서울YMCA 101차 총회 의결권, 선거권 인정 가처분신청
 2004년 2월 서울YMCA 양성평등을 원하는 남성회원 일동 "촉구문" 발표
 2004년 2월 여성회원 배제 서울YMCA 101차 총회 개최
 2004년 2월 여연, 참여연대, 환경연,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진정서 제출
 2004년 2월 여성참정권 인정 촉구 여성회원 1인 시위 시작
 2004년 2월 25일 서울YMCA 101차 총회 의결권, 선거권 등 인정 가처분 기각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서울YMCA 성차별에 대한 개선킴고"
 2004년 5월 한국YMCA 전국대회 '서울YMCA 여성참정권 촉구 입장'권고문 발표

2004년 6월 서울YMCA 여성 총회원 인정 절차 이행 요청서 발송
 2004년 9월 한국YMCA 전국연맹 여성특별위원회 발족(위원장 이영자, 최영철)
 2004년 10월 한국YMCA 전국연맹 여성특위 대표단 서울YMCA 박우승(이사장), 강태철(회장) 면담
 2004년 12월 서울YMCA 여성회원 98명 총회원권 인정 절차수행 요청
 2004년 12월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회 공식 권고문 발표
 2005년 1월 '절차이행 가처분 소송'청구 및 기자회견
 2005년 1월 여성참여 없는 102차 총회 반대 촛불기도회 시작
 2005년 2월 충남 문양지역 기자회견
 2005년 2월 절차이행 가처분 신청 기각
 2005년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 가처분 기각 관련 반박 설명 발표
 2005년 2월 '여성 참여없는 102차 총회 반대 및 남성회원인 여성 총회원권 부여여부 투표'반대 집회
 2005년 2월 여성참여 없는 102차 총회 반대 시민사회단체 집회
 2005년 2월 여성회원 배제 서울 YMCA 102차 총회, 여성회원 참정권 부여 여부 투표(400:200으로 통과)
 2005년 2월 '102차 총회는 서울YMCA 이사회의 자작극이다'성명서 발표
 2005년 2월 3.8여성의 날 서울YMCA 박우승 이사장의 어사 24명 성평등 결집돌로 선정
 2005년 3월 너머서 사무국 활동 개시
 2005년 3월 3.8 세계여성대회 참여 및 서울YMCA 여성참정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2005년 4월 월남 이산재 추모사에서 서울YMCA 성차별 반대 퍼포먼스 실시
 2005년 4월 서울YMCA에 서울YMCA성차별 철폐에 관한 입장 표명 요청
 2005년 4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공익 변론 신청
 2005년 4월 국회의원포럼에 연대 프로그램 제안
 2005년 4월 28일 서울시에 서울YMCA 성차별에 대한 입장표명 및 개선킴고 요청
 2005년 5월 17일 국회 양성포럼(국회의원 83명) 서울YMCA에 여성성차별에 대한 시정권고
 "여성회원에게 참정권을 즉각 부여하라"
 2005년 5월 18일 서울YMCA '서울YMCA 성차별에 대한 참정권 부여' 권고
 2005년 5월 22일 제9회 인권연화제 "슬로브릿의 발들" 선정 및 상연
 2005년 6월 독립 사무국 '너머서' 인사동 입주
 2005년 6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회에 양친지회 관련 서울YMCA 비자금 및 성차별 관련자료 송부
 2005년 6월 8일 서울YMCA 여성참정권을 위한 연맹 대책위원회에 요청서 송부
 2005년 6월 30일 서울YMCA 양친주민권의시설 재위탁 결정
 2005년 7월 1일 평등문화 가꾸기 제1차 포럼 실시 "파트너쉽으로서의 가족"
 2005년 7월 4일 서울YMCA 양친주민권의시설 재위탁 반대, 서울YMCA 회원 123명 성명서 발표
 2005년 7월 8일 서울YMCA 양친주민권의시설 재위탁 결정에 대한 서울시 감사 청구
 2005년 7월 9일 평등문화 가꾸기 제2차 포럼 실시 "자본주의 가부장제에서의 남성문화"

2005년 7월 상명서 '서울YMCA, 공공사무위탁 및 공공보조금 지원 반대 등을 전개하며' 발표
 2005년 7월 16일 평등문화 바꾸기 제3차 포럼 실시 여성의 눈으로 성서읽기
 2005년 7월 29일 소송원고 모임 및 '슬로브릿의 딸들' 최종본 시사회 실시
 2005년 8월 12-14일 회원 힐링 & 임파워먼트 워크샵 실시
 2005년 8월 26일 YMCA 전국 실무자 대회 '슬로브릿의 딸들' 상영 (250명 이상, 전국Y 실무자 대상)
 2005년 9월 1, 4일 광주국제영화제 '슬로브릿의 딸들' 상영 및 매진
 2005년 9월 14일 서울YMCA 정기이사회(마포 홀리데이인 호텔) 여성참정권 부여 촉구를 위한 집회
 2005년 9월 24일 인천여성영화제 '슬로브릿의 딸들' 선정, 상영
 2005년 10월 서울YMCA 양천주민편의시설 재위탁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005년 10월 서울YMCA 영등포지회 재위탁 관련 서울YMCA 비자금 및 성차별 관련자료 송부
 2005년 10월 서울YMCA 서초지회 재위탁 관련 서울YMCA 비자금 및 성차별 관련자료 송부
 2005년 10월 29일 안디영화 페스티벌 '슬로브릿의 딸들' 선정 및 상영
 2005년 10월 27일 아수인권영화제 선정, 상영
 2005년 10월 부산인권영화제 '슬로브릿의 딸들' 선정 및 상영(예정)
 2005년 11월 4일 '성평등 참여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실시(예정)

3. 나가는 길

아직까지 서울YMCA의 여성회원들에 대한 성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시민사회 자체의 한계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을 위한적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보고 시정권고문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의 실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해결하기보다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즉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서울YMCA의 구시대적 차별행위를 엄중히 추궁하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문제의 당사자인 서울YMCA가 형식적 자율성을 내세우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가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지 120여년, 그동안 한국의 개신교는 1,000만여 명의 신도를 거느린 거대한 종교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교회는 양적 팽창에 부응하는 질적 성숙을 이루지는 못했다. 서울YMCA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과 배타적 이데올로기, 가부장적 교리문화와 권위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15%를 넘어섰고, 호주제 폐지와 여성의 종중원 인정판결 등 희망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저귀한 여자들은 안돼!'라는 상식 이

하의 태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여성들의 권익지수는 최하위로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YMCA 사태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YMCA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운동체로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종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YMCA 현 건물은 1967년에 재건된 것으로 당시 대종과 서울시장을 포함,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건립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서울YMCA는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청년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서울YMCA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길다. 하지만 서울YMCA를 바로 세우는 일에 뜻을 함께 한 회원들은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년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언젠가 서울 YMCA 회원들이 밟고 있는 성차별, 철폐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것은 시민단체 안에 퍼져 있는 냉소적 무감각과 전근대성을 극복하고 NGO의 민주적 원칙을 새롭게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YMCA 회원들은 최근 민변 소속 여성변호사 20여명(대표 정연순 변호사)과 함께 법원에 손해배상을 포함한 본안소송에 이어 서울YMCA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해 서울시민감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서울YMCA 사태의 정치적 공론화를 포함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공공의 영역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오늘 서울YMCA의 반인권적인 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은 서울YMCA를 투명하고 정직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 시민사회가 한걸음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에서 보는 서울YMCA 사태

송영한 <구리YMCA 이사>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러시아 출신으로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시는 '박노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요즘 들어 '인물과 사상'이라는 시사매거진에 연재하는 글이 초기불교 이해에 관한 '박노자의 산 경전 읽기'라는 코너인데 이번 11월호에 '변성성불론(變性成佛論)'이란 글을 쓰셨더군요.

변성성불론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승불교의 경전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법화경 제12장 '용녀의 전설' 편에 '여자의 몸은 5가지 장애가 있어 성불하기 힘들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몸은 다섯 가지 장애가 있나니 첫째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니라.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성불 할 수 있겠는가?'는 구절이 있고 이어서 그 용녀가 잠시 남자의 몸을 갖추고 성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YMCA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병풍맞게 열 불교애기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었지만 중세의 마녀사냥에서부터, 여성의 피압이나 여성의 신부서품에 대한 완고한 반대나, '기치귀한 여자가 어떻게 감당에 올라갈 수 있나'고 일갈하며 여성의 목사 안수를 극력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교파의 수준에 비춰 그나마 여성의 차별이나 탄압이 덜한 걸로 알고 있던 불교경전에조차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종교집단 내에서조차 이런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인류 창조 이래 최고의 문화를 이루고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아직도 원시시대나 통했던 마초적 잔재조차 청산하지 못한다는 대해 이르러서는 부끄럽기조차 한 것입니다.

사회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각기 가진 생각들을 서로 존중해야하고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중에 하나가 차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차별, 장애인차별, 학력 차별, 지역 차별 등 많은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별이 무엇입니까? 차별은 죄악입니다. 신앙의 천부인권설과 동양의 인내천사상을 물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 성경에 비춰 봐도 어떤 차별도 합리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개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YMCA 목적문을 낭독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YMCA회원이나 만큼 YMCA 목적문안에서만 우선 예기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바리사이인들의 조종을 받으며 창기와 세리를 품어준 사실과 다섯 남자와 난잡한 관계를 가지던 사마리아여인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조차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알 것이며 악취가 진동하는 혈투병 걸린 여자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지 알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로 드려서 성전 지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의 벽을 허물어 버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벽을 허물었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는데 우리는 똑같이 복 주어 창조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벽을 더 높이 쳐서야 어떻게 그분의 뒤를 따른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YMCA목적이 사랑과 정의에 있고 그리스도를 닮는데 있다면 차별을 없애자는 이런 토론을 서울 YMCA회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YMCA는 2003년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서울 YMCA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도 아직도 여성회원에게 총회원 자격을 주지 않는 사실에 대해 100년동안 지켜온 관습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100년을 지켜온 관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100년의 세월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내면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관습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들에게 휘둘렀던 채찍은 예수의 처음이자 마지막 불리력 행사였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은 깨버리고 바른 것을 나타내야 한다" 과사현정(破邪顯正)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랑의 대명사라 하는 예수도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진정한 마초적기치질은 이런 때 발휘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생각해봅시다. 갈릴려오의 지동설을 단죄했던 카필릭이 아직도 관습이라는 이유 때문에 천동설을 주장한다면 지나가는 초등학교생이 못지 않겠습니까?

올 초에 용평에서 있었던 YMCA지도자 연합회 토론회에서 어느 서울YMCA 관계자 분께서 "총회 때에 여성회원들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나오면 심부름이나 시키고 먹을거리 준비나 시키거나 안 나오지 총회 부

표권을 주면 왜 안 나오겠느냐?” 그랬더니 말씀이 없으세요. 성선을 달라하는데 뽕을 주면 되겠습니까? 뽕 대신 뽕을 주면 받겠습니까?

제 말이 좀 원론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능한 한 '서울Y사태를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평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라 지역평등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래서 좀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자그마한 위성도시이고 전국에서 제일 작은 면적인 구리시에서 활동하는 제가 어떻게 감히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일은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리시에서 Y활동을 하면서 지역언론 기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비교적 지역의 여론에 밝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지역에서 서울Y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고 묻는다면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Y활동을 하다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서울 Y처럼 회원도 4만명씩 되고 투표권도 안주는데도 불구하고 연회비를 내는 훌륭한 여성회원들이 2만5천명씩이나 되는 단체라면서야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많은 지역Y를 움직이려면 일단 아기스포츠단 단원모집이 잘돼야 하고 선한이웃 회원모집이 잘돼야하고 특별후원금 모금도 잘해야 합니다.

총장님이 "이사님, 통일 자전거 한 대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커피 좀 팔아주세요."하고 뭐 이사를 좀 부리듯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집 할 것 없이(물론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다가(제 말을 들어 줄 것 같은 만만한(?) 여성 분을 만나면 YMCA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가능하면 아이들을 아기스포츠단에 좀 보내주시지요' '선한 이웃에 가입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자전거나 커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서 가끔씩 어떤 분들이 서울Y에 대한 보도를 보고, 들었다면서 'YMCA가 그렇게 마초 집단인줄 몰랐다' '지금이 조선시대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파 대고 자발이냐'고 따지고 들면 작업은커녕 그저 잘 먹은 병어리가 되고 맙니다. 자과 감도 새기고요... '아 굶고 배고파도 이런 맛에 Y활동을 한다' 이런 자긍심 하나로 살아가는 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리Y가 올해 창립 10주년인데 이런 분들에게 창립 10주년 특별후원금 좀 부탁한다면 잘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 아내 설득하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이런 우스개 소리를 했습니다. '서울Y는 여성회원에게 투표권을 안준다는데 우리 지역Y들은 2장씩 주면 어떻게? 그러면 아기스포츠단도 늘어나고, 선한이웃도 늘어

나고 커피도 잘 팔리고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총장님이 대경실색하시면서 "이런에 남자들이지도 않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서 가지미눈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저도 '서울Y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여성회원차별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성을 대할 때 '여성은 갈빗대에 불과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듣는 배필' 즉 구원의 동역자라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생김새와 기질이 그 역할이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둘이 꼭지어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YMCA의 목적으로 이 땅에 사랑과 자유와 평등이 숨 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맡은 역할과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Y여성회원의 총회의결결 인정이야말로 말로 평등과 통합을 통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서울YMCA 소송의 경과와 사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망

정 연 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민변 변호사>

자력구제 및 폭력적 분쟁해결을 금지하는 민주사회에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주체는 법원일 수 밖에 없다. 사법부는 소극적으로는 문자화되어 있는 법조문의 해석 및 적용자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시대가치에의 조응자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할 때, 분쟁의 당사자는 고통을 겪고 일반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서울YMCA여성 참정권부여의 문제는 일반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그 해결이 보이는 것이다. 고대노예제나 중세 봉건제도 아닌 민주주의 사회이며, 우리사회에서도 누구든지 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선언되고, 현실에서 적용되어 온지 적게 보아도 60년이 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수백년간 특별한 법규정도 없이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온 유지되어 온 종중이라는 사적 집단도 이러한 시대가치 앞에서 새롭게 규정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정상, 어디에도 회원을 명시적으로남성회원회에 한한다고 못 박음이없었고, 수많은 여성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봉사로 성장을 이루고 명성을 이어온 서울ymca에서 그 여성회원들의 참정권행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온 서울 ymca의 보수적인 이사회와 운영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2차례에 걸쳐 가처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 2004년도 가처분 재판

동 재판부는 실체적인 내용의 판단에 들어감에 있어, 신청인들이 총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이사회나 회원위원회의 결의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2005년도 재판

2004년도 재판을 거울 삼아, 신청인들은 이사회나 회원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해달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동시에 선택적으로 총회원으로서의 임시의 지위를 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동 재판부는 임의 단체의 경우 일종의 자치법규로서 조직을 운영할 재량권이 허용되는 것이고,

서울 ymca의 헌장의 해석상 일정한 요건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총회원이 된다는 규정은 발견할 수 없었고 회원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목적을 고려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성을 총회원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절차가 눈앞에 있는 이상 신청인들을 배제한 채 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3) 사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실체적인 판단을 도의시한 재판부

지금까지 서울ymca는 단 한명도 형식적 요건을 갖춘 남성회원들을 총회원에서 탈락시키지 않았다. 즉 재판부는 헌정상 형식적 요건을 갖춘 회원을 이사회나 회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결정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문상 기속조항이있는 것은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와 같이 기속적 행위처럼 행하여져 왔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에게 편중되어 나타났다면 당연히 이는 기속적 행위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총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배제시킬 합리적 이유를 거시하지 못하는 한, 총회원의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법리이다.

나) 실질적 차별에 대한 인식 부족

성차별은 명시적 문구나 언동으로써 하는 직접적인 차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오랜 관습의 시행이나 특별한 채용 및 근로조건의 적용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결과가 어느 성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나타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 헌법상 성차별금지의무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게는 당연한 것이며, 사인간에 있어서는 특별법이나 법의 일반조항(선량한 풍속조항, 불법행위 등)을 통해서 그 효력이 점차 넓게인정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 사건에서도 총회원자격불인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다) 실질적 사법정의 구현의무 방기

이 사건의 경과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모아 부당하다고 한다. 혹자중에는 정관이나 헌장에 남성회원으로만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설명을 듣고 나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 개탄한다. '인지상정'이라는 4가지 단어에 함축된 의미는 아주 단순한 '사법정의'의 표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수십년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그런데 의무를 수행할 지위와 권리를 수행할 지위가 교묘하게 분리된 제도 때문에 '죽도록 일만 하는' 신세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사법부의 판사 누구도 이 일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를 중의 누나이든, 동생이든, 딸이든 간에 서울ymca의 여성회원으로서 있어서 이 아기를 듣게 되었다면, 분개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 정말로 반문하고 싶다. 사법정의는 '눈물을

뒀어주고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고결하고 복잡한 형식 논리라도 그앞에서 는 빛을 잃는 것이다. 재판부가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큰 목적 아래 헌법적 불안에서 고민하였 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4) 이후의 소송경과

해마다 특정일에 총회원을 지정하고총회를 개최하였다가 해산하는 서울ymca의 조직 특성상 총회 원으로인정해달라는 법적 청구는 그특정일 전에 가처분 형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여성회원들은 2003년도 총회결과를 뒤집고 이후 2004, 2005년도 회원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여성회원들을 계속 총회원으로 추천하지 않은 이사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기하였으며,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다가를 2006년에도 다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 다.

사법부가 정의가 감물처럼 흘러내리는 판결을 내려주어 우리 모두가 환호하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 아 기다린다.

<토론>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함영이 <우먼타임즈 취재부장>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YMCA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호주제 폐 지가 결실을 맺고 딸들의 종중원 자격 획득 등으로 고무돼 있는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겨준다. 때스럼에 '여풍'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일부에서는 역사별을 운운할 정도로 한 국사회의 여권은 신장되고 있지만 서울 YMCA처럼 기본권인 참정권조차 주지 않으려는 단체 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여성의 지위를 조사하는 국제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꼴찌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이 같은 단체들의 잘못된 시각이 조장하는 사회분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여성인력, 특히 고위직 여성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도입했 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여성 1호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여성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력(고위직으로 갈수록)은 미미한 수준임을 파악 했기 때문이다.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처럼 서울 YMCA의 성차별 사건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하다.

서울 YMCA사건에서 적극적인 대처는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와 지지라고 판단된 다. 서울 YMCA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관행과 제도는 국내는 물론 해외 YMCA 지 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성차별철폐연대회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문제가 서울 YMCA 울타리 안에서는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들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성단체와의 연대와 함께 여성에게 참정권을 쥘야 한다는 당연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줄 '기 참정권자'(남성회원)와의 연대 역시 중요하다.

한국사회가 저 출산 위기를 맞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성불평등이다.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흔들 수 있다.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고르게 인지하는 '성인지'를 국가 정책의 기본 틀로 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면 정책기본비판과 어긋나는 단체에 대해 서는 '공공시설 위탁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과녁타를 주는 적극적인 대처 역시 강구해 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사회단체로 "사회생활환경의 개선과 역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 한 다"고 공언하고 있는 서울 YMCA이기에 적극적인 대처는 더욱 절실하다.

<토론>

서울YMCA 여성참정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이다

황 성 기 <한림대 법학부 부교수>

몇 년 전부터 서울YMCA가 내부규정의 명시 등 아무런 근거와 타당한 이유 없이 여성회원에게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 참석할 권한과 의결권을 주지 않는 등 여성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론자는 서울YMCA 여성 참정권 제한이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근대헌법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공권으로 인정되었을 뿐, 전면적인 효력을 갖는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즉,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헌법이나 공법과는 별도로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를 최고의 원리로 하는 私法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따라서 기본권은 사인간에 있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지배적 견해였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권력 이외에도 사인이나 기타 사회적 제세력에 의하여 계약자유와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많아짐으로써, 이러한 경우에 사인 상호간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생활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여기에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일반 제3자인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사인으로부터의 법익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내지 對私人的 효력(Dritwirkung)의 문제이다.

대사인적 효력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독일기본법 제9조 제3항¹⁾, 일본헌법 제15조 제4항²⁾, 포르투갈의 1975년헌법 제18조 제1항³⁾,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4항⁴⁾ 등과 같이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각종 인종차별 및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미국의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금지 등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규정들처럼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해결

하는 방법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독일의 직접적효력과 간접적효력, 미국의 state action theory(국가행위의제이론) 등 헌법해석에 의한 방법도 있다.

위와 같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일반이론 및 원리를 전제로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구현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YMCA사건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회원의 참정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법 제3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성별'에 의한 평등권침해에 분명히 해당된다.

또한 총회에서의 참정권 및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단체의 조직, 정책이라든지 서비스 등에서 여성인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단위의 선거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배제하더라도, 국회에서 여성차별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논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

결국 서울YMCA 여성 참정권 제한이 여성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국가가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규제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본권침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각종 지원정책에 있어서 패널리즘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익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지원 등이 이러한 단체에는 아예 적용될 수 없도록, 이러한 단체는 처음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등록을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용서하고 또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는 각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위법하다."

2)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권리자유 및 보장수단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소위 어느 단체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이들을 구속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여 백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4진차12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진 정 인 김 성 회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5-37 경기빌라 101호

피진정인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약칭:서울
YMCA) 이사장 박우승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

주 문

1. 피진정인이 서울YMCA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 등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된다.
2. 피진정인은 서울YMCA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총회 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취지

피진정인이 서울YMCA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한 주장

(1) 서울YMCA는 설립 이래 100여년간, 여성회원들도 남성들과 함께 서울YMCA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성차별행위이다.

(2) 서울YMCA는 남성단체가 아니며 1905년부터 여성들이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자료가 서울YMCA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또한 남성단체임을 표방하거나 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회원비율도 여성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YMCA는 기독교사회운동단체로 시민운동, 청소년운동, 평생교육운동, 사회체육운동 등을 전개하는 회원이 중심이 되는 회원운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3) 세계YMCA 강령으로 채택되어 있는 '도전21(1998년 제14차 세계YMCA대회에서 채택)' 2항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청년과 여성들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모든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위해 일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미 세계적으로 YMCA가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YMCA 전국연맹의 43개 가맹YMCA 중 서울YMCA를 제외한 전국 42개 지역YMCA는 이미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4) 세계YMCA가 설립될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팽배한 사회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요즈음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Men을 단순한 사전적 의미에서 '남자'라고만 해석한다면 History역시 '남자의 역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서울YMCA는 1903년 창립되어 100여년간 민족의 근·현대사와 함께 해온 최초의 민간운동단체로 남성을 본위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서울YMCA의 정체성은 남성단체이고 서울YMCA 헌장상의 총회구성원이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100여년간 이어온 관습이다. YMCA의 M또한 남자 Men을 의미하기에 여성에게 총회 참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장개정이 필요하다.

(2) 서울YMCA 헌장제1조(YMCA로 칭한다는 조문)와 남자기독교청년단체로 발족되어온 전통과 역사성과 여성기독교청년단체인 YWCA와의 관계에서 총회회원을 남자만 추천해서 이사회에서는 추천된 분만 총회회원으로 선정하여 왔다. 헌장 제1조를 개정하고 회원위원회에서 여자도 추천하면 여자도 총회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남자청년단, 여자청년단, 보이스카웃, 걸스카웃과 같이 조직과 운영은 내부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될 문제이다.

(3) 서울YMCA는 여성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각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복정시설이용 및 특정프로그램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여성회원들도 각종 위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각종 클럽을 조직하여 대사회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물론 본회 의사결정에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총회회원의 경우 YWCA에 대응하는 남성단체라는 정체성으로 100여년 간 제한하여 온 역사와 관습이 있고 이는 근본 조직규범이다.

3.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

가. 헌법

제11조 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실존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라) 여성에 대한 이러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 하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마) 이러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제3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법률, 특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에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애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 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4. 인정 사실

가. 총회회원(총회구성원)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YMCA헌장' 제12조 1)은 총회구성원의 자격을 '만20세 이상의 기독교의 정회원(입교인)인 사람'과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여성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3)에 '총회구성원에게는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YMCA 회원은 일반회원과 총회회원으로 구분되나 회비액수의 차이는 없고 일반회원 36,000여명 중 총회회원은 1,508명으로 모두 남성이다. 반면에 한국YMCA전국연맹의 가맹YMCA 43개 중 서울YMCA를 제외한 전국 42개 지역YMCA는 여성회원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이 인정되고 있다.

다. 2004. 3. 1. 영·호남지역 21개 YMCA가 서울YMCA에게 총회회원에서 여성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4. 4. 8.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정기이사회에서 서울YMCA 이사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권고한 사실이 있다.

라. 대한YWCA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회원YWCA(여자기독교청년회)에도 남성회원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총회 의결권 등이 일부 주어지고 있다.

마.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2004. 2. 20. 서울지방법원에 의결권동허용가처분신청(2004카합392)을 제기하였으나 '회비납부·회원활동 참여여부 등 총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25. 기각되자 같은 해 2. 26. 항고하였다가 같은 해 2. 27. 취하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서울YMCA 여성회원들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 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래 사항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합리한 성차별행위로 판단된다.

(1) 서울YMCA의 정체성이 남성단체이므로 여성을 총회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이 피진정인의 주장인 바, 서울YMCA가 설립된 100여 년 전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미약하여 남성중심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져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참여가 활발한 21세기 사회변화의 흐름과 서울YMCA의 다양한 활동에 여성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한 점, 서울YMCA와 유사한 조직성격과 활동내용을 가진 전국 43개의 지역 YMCA 중 서울YMCA를 제외하고는 YMCA가 남성단체라는 이유로 총회회원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점, 그리고 한국 YMCA전국연맹과 영·호남지역 21개 YMCA가 피진정인에게 총회회원에서의 여성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피진정인은 여성회원들을 총회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서울YMCA헌장'을 들고 있는데 조직내부 규정의 성격을 갖는 '서울

YMCA헌장'에 총회회원(총회구성원)의 성별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여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피진정인은 서울YMCA가 남성단체라면서 YWCA(여자기독교청년회)가 남성을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단체라는 점을 총회회원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YWCA에서도 현재 남성들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성 정회원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권 등이 일부 인정되고 있다.

나.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2004. 2. 20. 서울지방법원에 의결권동허용가처분신청(2004카합392)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2004. 2. 25. 기각되자 같은 해 2. 26. 항고하였다가 같은 해 2. 27.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아래 사항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진정사건은 각하대상도 아니다.

(1) 가처분이란 보전처분의 하나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확정판결의 집행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의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유지하거나 법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2) 이와 같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무수적인 것으로 이러한 성격은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총회의결권행사라는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그 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이유가 '신청인들이 총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의결권동허용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진정의 원인사실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서울YMCA의 총회회원(총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 등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서울YMCA 여성회원들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YMCA에 대한 우리의 권고

-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즉각 부여하라 -

서울YMCA가 지난 2005년 2월 26일 102차 총회에서 여성회원에게 참정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관한 의안을 부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남녀평등의 실현에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소망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이 그 시정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권고주문)

1. 우리는 여성회원에게 대하여 단체의사 결정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서울YMCA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서울YMCA는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즉각 부여하는 절차를 취하는 등 그 운영상 남녀 차별적 요소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
2. 이와 같은 우리의 권고에도 서울YMCA가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서울YMCA를 남녀차별단체로 간주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 중지와 그 운영을 위임한 공공시설 임차권의 회수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통지한다.

(권고이유)

주문과 같이 권고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객관적 질서의 핵심 요소인 남녀평등 이념 그리고 회원인 이상 단체 의사결정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국민의 소박한 법감정 그리고 서울YMCA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 동안의 역할 등을 고려한 파장 때문입니다.

본래 서울YMCA는 "저희로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운동이념을 갖고 탄생한 후 또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전통을 이어 왔으며 이를 구현하는 정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회원에 대하여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견권 등 참정권 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적인 평가를 떠나 신문화 소개에 앞장서 국민의 개명에 크게 이바지한 그 동안의 전통과 업적을 바탕에 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며, 창설 이래 남성과 동등하게 일반회원으로서 서울YMCA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에 열성적으로 헌신해 왔으며 오늘날 전체회원의 60%를 차지하는 여성회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저버린 것이며 때려논커녕 오히려 명백한 남녀차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서울YMCA는 자체적으로 2003년 2월 22일 제100차 총회에서 향후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고,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 결의를 이번에 다시 감행한 것은 국민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여성 참정권의 배제는 사회질서의 핵심적 요소인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당한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명백히 성차별이어서 그 금지를 선언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YMCA는 100여년 전에 남성들만의 단체였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궁색할 뿐입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83명으로 구성된 '국회 양성평등포럼'은 서울YMCA에 주문과 같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17일

국회양성평등포럼

공동대표 김춘진 이은영 박세환 이계경

고경화, 고진화, 공성진, 권경석, 권영세, 김기현, 김덕규,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성곤,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재홍, 김재윤, 김정훈, 김춘진, 김한길,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박계동,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서해석,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안경률, 안명옥, 안홍준, 오영식, 오제세, 유기준, 유승민, 유승희,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석현, 이성권, 이은영, 이인영, 이종구, 이주호, 이호웅, 임인배, 장윤석, 정몽준, 정병국, 정종복, 조배숙, 지병문, 진수희, 진영,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한광원, 한명숙, 현애자, 홍미영 의원 (이상 83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4카합592 의결권등허용가처분
 신청인 별저 기계와 같다.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김명종
 피 신청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대표자 이사장 박우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조경구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1. 이 사건 신청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취지

사건 피신청인은 2004. 2. 28. 개최되는 제101차 총회에서 신청인들에게 의결권, 선거권 등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은 위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등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결정

이 유

1. 신청인인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여성 회원으로서 피신청인 현장이 요구하는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구비한 자들인바, 피신청인은 설립 이후 여성 회원들에게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바 있었으나, 2003. 2. 22.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의 모든 의사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선거, 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제정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YMCA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문(이하 '이 사건 결의문'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 2. 28. 개최예정인 제101차 정기총회에 총회 구성원으로 참석을 원하는 신청인들에게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 현장 및 이 사건 결의문의 취지,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치분의 결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 판단

가. 피신청인 현장 제12조 제1항은 피신청인 총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 ①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정회원(입교인)인 자, ②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 피신청인의 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 구성원의 자격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자(제12조 제1항)일 것을 규정한 사실, 현장의 하위 규범으로서 이사회에서 제정한 '서울YMCA 회원규정'(이하 '회원규정'이라고만 한다) 제6조는 피신청인의 총회 구성원(위원규정상에는 총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장의 총회 구성원과 같은 의미로 파악된다)의 자격 요건으로 ①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세례 입교인인 자 ② 보통회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③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회원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 결정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된다.

나. 피신청인과 같은 임의 단체의 경우,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피신청인이 제정한 현장 및 회원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회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갖되, 다만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회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의 제한을 받으며, 만일 이러한 제한에 위반할 경우, 그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현장 및 회원규정 중 총회 구성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 회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현장 및 회원규정 중 총회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위헌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을 포함한 피신청인 소속 회원은 현장 및 회원규정에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라야만 비로소 총회 구성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모두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세례입교인인 사실은 소명

되나, 그 이외 요건, 즉 보통회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였는지,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 피신청인의 활동에 참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원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 심의 결정 등 총회 구성원 선임에 요구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소명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현장 및 회원규정에 의한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여성회원의 절차 참여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결의문이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사실은 기록상 소명되나, 위 결의문 채택으로 인해 총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정한 현장 및 회원규정이 폐지 또는 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장 및 회원규정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신청인들에게 곧바로 총회 구성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4. 2. 25.

계관장 판사 이태운

판사 김인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5카합53 절차이행가처분
 산 립 인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지선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김명종
 피 신청 인 서울기록교정협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
 대표자 이사장 박우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구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선례적으로,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절차를 이행하라. 2.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일당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또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2005. 2. 26.자 정기총회에서 총회 구성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는 결정

이 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여성 회원으로서 피신청인의 헌장이 요구하는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구비한 자들이고, 피신청인의 2003. 2. 22.자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선거, 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 YMCA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문'(이하 '이 사건 결의문'이라 한다)이 채택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헌장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의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2005. 2. 26. 개회예정인 제102차 정기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헌장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구성원임을 확인받아 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산하 회원위원회에 총회 구성원으로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원위원회 추천 및 이사회 심의,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헌장 및 이 사건 결의문의 취지,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위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의 결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헌장 제12조 제1항은 피신청인의 총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 ①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정회원(입교인)인 자, ②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 피신청인의 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 구성원의 자격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자일 것으로 규정한 사실, 헌장의 하위 규범으로서 이사회에서 제정한 '서울YMCA 회원규정'(이하 '회원규정'이라고만 한다) 제6조는 피신청인의 총회 구성원(위 규정상에는 총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헌장의 총회 구성원과 같은 의미로 파악된다)의 자격 요건으로 ①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 세례 입교인인 자, ② 보통회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③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회원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신청인들이 2004. 12. 13. 피신청인의 이사장 및 회원위원회 위원장에게 총회 구성원 자격 부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005. 1. 14. 개최된 피신청인 산하 회원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을 총회 구성원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된다.

나. 한편 피신청인과 같은 임의 단체의 경우,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피신청인이 제정한 헌장 및 회원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회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갖되, 다만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회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제한을 받으며, 만일 이러한 제한에 위반할 경우 그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헌장 및 회원규정 중 총회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이를 인정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이 위헌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을 포함한 피신청인 소속 회원은 피신청인의 헌장 및 회원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자격 요건은 물론 피신청인 산하 회원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하여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비로소 총회 구성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헌장 및 회원규정에 피신청인 소속 회원이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피신청인 산하 회원위원회나 이사회가 계속적으로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여야만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여성회원의 절차 참여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결의문이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위 결의문 채택으로 총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정한 헌장 및 회원규정이 폐지 또는 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피신청인과 같은 임의 단체의 경우 그 성질상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추천하여 결정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단체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거나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총회 구성원을 추천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절차의 이행 또는 총회 구성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고, 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긴급히 가처분을 발하여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라. 둘이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4. 9. 25. 피신청인의 운영에 관한 제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헌장·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이 총회 구성원 자격인정을 위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무렵인 같은 해

12. 21.경 이미 피신청인의 정관이 여성 회원들을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의를 거쳐 이를 헌장 개정이나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건의하였고, 피신청인의 이사회는 2005. 1. 24. 위 사안이 피신청인의 헌장 제14조 제1항 사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2. 26. 개최될 예정인 정기총회의 안건에 여성 회원의 총회 참여권 인정 여부를 포함시키기로 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결국 피신청인 소속 회원들 사이에서도 그 헌장의 해석에 관한 다름이 있고 이에 관한 소속 회원들의 총의를 확정하는 절차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기총회에서 확인된 소속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헌장을 해석하거나 헌장을 개정할 경우 그 헌장이 회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 산하 회원위원회가 총회 구성원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청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한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총회 구성원의 실질적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신청인 김성희, 김유임, 류경자, 박계현, 손정희, 장명자는 모두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세례입교인인 사실, 보통회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들이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 피신청인의 활동에 참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상 소명자료가 없다) 피신청인 산하 회원위원회가 신청인들을 총회 구성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 산하 회원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이사회로서도 신청인들을 총회 구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헌장 및 회원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바 없는 신청인들에게 곧바로 총회

구성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5. 2. 23.

재판장	판사	이태운
	판사	전휴재
	판사	이효재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제37차 전국대회 결의문

한국YMCA전국연맹 제37차 전국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63개 YMCA 550여 참가자 일동은 "생명 · 평화 · 지역사회"라는 주제 하에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가 던지는 여러 도전들에 대해 함께 배우고 토론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기독교청년운동체인 YMCA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과제들에 대해서도 성찰하였다.

우리는 기독교청년회가 종교, 연령, 성과 신분 등에 관계없이 개방적인 회원정책을 지닌 열린 교회로서, 청소년과 청년을 Y운동과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세우고자 힘쓰며, 여성 지도력의 역량 강화에 특별한 강조를 두는 정신도 예외없이 사회운동체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한국YMCA운동 2세기의 새로운 상징(象征)을 떠나는 결의로 청년이 중심이 된 회원운동체, 선교적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독교사회운동체, 정의와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생명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사회의 중앙 집중과 부정부의 문제는 지역사회를 위협시키고 있으며, 경제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냉혹한 경쟁의 격화, 빈부격차의 심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훼손, 물신주의와 노동조건의 악화 등은 우리 기독교청년운동체가 추구하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시금 성서가 가르치는 "생명"과 "평화" (Shalom)를 지금 이 시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장화 할 것을 새롭게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군비확산,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 등을 깊이 우려하고, 최근 북한 용천역에서 일어난 비극이 민족의 아픔임을 고백하면서 이를 치유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

우리는 다가오는 10년동안 YMCA 제1의 정체성인 청년성을 회복하고 청년학생들이 YMCA운동의 중심에 서도록 하며, 세계화의 시대에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당으로서 지역사회를 새롭게 발견하여 생태적이고 정

의로우며 공동체적인 지역사회를 가꾸고, 이를 토대로 평화에 뿌리내린 지구촌 시민사회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변화를 이룰기 위한 자기성찰과 갱신

우리는 한국YMCA의 운동성을 회복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자기성찰과 내적 갱신이 절실하다고 믿는다. 특히 최근 한국YMCA가 일반적 사회민주주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YMCA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에 YMCA운동의 정체성과 역사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조직 내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의 교류와 호응을 원활히 하며,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연맹과 각 시청년회 차원에서 끊임없는 내부적 갱신과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공동의 과제

이제 우리는 "생명과 평화가 지역사회에 넘치도록" 아래와 같이 우리공동의 운동과제를 재확인한다.

1.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이라크 침략 등 인류미래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을 반대한다. 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이라크 민중의 아픔에 동참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린이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전국YMCA 회원과 시민들을 위한 평화교육 교재의 개발과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논거와 행동에도 반대하며 한민족 생명공동체, 나눔공동체를 위한 통천주민들기, 탈북자 지원, 탈북청소년 돕기에 회원 모두가 동참한다.
2. 우리는 청소년운동체로서 풀어야 할 긴급한 교육문제로 매년 6만명의 학업포기 청소년학생들이 양산되고 있는 공교육 현장의 문제를 긴급하게 풀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가칭) 대안교육연구회를 구성하여 관심분야의 정보제공, 연구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3. 우리는 청소년이 시민권을 지닌 고유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청소년이 시민사회와 YMCA운동에 당당한 참여적 주체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의 주체적 조직을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와 YMCA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청소년운동체로서의 자기 위상을 손상시키는 사업관행과 오류를 즉각 시정해나가고 YMCA가 청소년의 진정한 벗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지속적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4. 우리는 전국YMCA 시청년회 어느 곳에서도 여성회원의 총회위원권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여성의 총회위원권을 원천봉쇄하여 모든 YMCA가 대사회적 지탄을 받게 한 서울YMCA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서울YMCA가 여성에게 총회위원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제14차 세계YMCA대회 '도전21'과 아시아대회에서 결의한 YMCA내의 여성참여에 관한 기준이 한국YMCA내에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YMCA 기준현장을 개정하고, 한국YMCA연맹 및 시청년회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 요인을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구조로 한국YMCA연맹내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5. 우리는 한국YMCA 9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도적 민주화의 진척과 더불어 시민의식의 성숙은 성숙한 시민사회형성을 위해 시민정치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며 일반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 전국단위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6. 우리는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한국YMCA운동에 있어 도농공동체 운동 및 생활협동운동은 중요한 운동과제임을 다시 확인하며 그동안 이러한 과제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하고 전국차원의 농촌사업 및 생활협동운동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4. 5. 15.

제 37차 한국YMCA 전국대회 참가 대의원 일동

서울YMCA 여성참정권 문제에 관한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회의 입장

오늘 3월25일 한국YMCA전국연맹 제1차 정기 이사회로 모인 우리는 본 연맹의 여성특별위원회가 다시금 제기한 "서울YMCA 여성총회위원 배제에 따른 대책 논의 요청"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연한 입장을 밝힌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YMCA는 성에 구애 없이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독교청년회 기본헌장 제6조의 정신과 "YMCA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기독교운동"임을 밝힌 세계YMCA연맹의 "Challenge 21"(1998년 7월 제14차 세계YMCA대회에서 채택)의 원칙을 재확인한다.

'저희로 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루살렘공동체로서 시대를 앞서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YMCA가 한국YMCA전국대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제 시민단체들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102차 총회에서마저 여성을 총회에서 배제한 결정을 개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서울YMCA의 여성참정권 배제는 지난 100여년간 한국YMCA가 쌓아온 사회적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서울YMCA 여성참정권 부여는 현장개정 사항이 아님을 재차 확인한다. 서울YMCA로 인해 한국YMCA 전체가 더 이상의 사회적인 비난에서 벗어나, 기독교청년운동의 새로운 100년을 튼튼히 출발하기 위해서는 서울YMCA의 여성참정권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함을 재차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 이사회는 서울YMCA 여성참정권 인정이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특별위원회'의 과제로만 그치지 않고 전국YMCA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재차 확인하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YMCA운동을 부끄럽지 않게 이어가려는 뼈아픈 충정으로, 그리고 한 지체의 아픔을 곧 전체의 아픔으로 보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서울YMCA 여성참정권을 위한 전국연맹 대책위원회'(약칭: 서울Y 여성참정권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1. 대책위는 오는 2006년 2월 서울YMCA 제103차 정기총회를 시한부로 서울YMCA의 여성참정권 확보를 위해 연맹 이사회로부터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2. 대책위의 활동은 연맹 집행이사회에 보고하며, 실효성있는 활동을 위해 집행이사회와 의사소통을 활발히 한다.

3. 본 이사회는 다시 한번 비통한 심정으로 서울YMCA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즉각 부여함으로써 한국YMCA 전체가 더 이상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25일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회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YMCA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문²⁾

서울YMCA는 100년 전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으로 무장한 선한 청년들이 모여, 이 땅에 민주적 미래를 개척하고 고난받는 민족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출발한 운동체이다. 이 운동체의 출발부터 청년과 장년이 함께 하고 양반과 상민이 함께 하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한 사실은 서울YMCA의 역사이며 모두의 자랑이었다.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먼저 무장하고 이를 시민사회에 널리 심어 사회변화의 선구적 역할에 온 YMCA가, 누구보다 먼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운동체로 출발한 YMCA가, 오랜 기간 동안 여성 회원의 참여 의지와 역량을 되변하여 YMCA운동체의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여성 회원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운동체로서의 YMCA의 역량을 스스로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서울YMCA는 시민사회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좇아, 일감을 찾고 땀흘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운동체이고자 한다. YMCA운동에는 영광보다는 고난이, 열매를 따는 기쁨보다는 씨 뿌리는 수고가 더 많을 것이며, 혼자 열 견을 가지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한 견을 가는 것이 더 귀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 기관 곳곳에서 소리 없이 일해 온 여성들의 지혜와 수고가 있었으며 다가올 YMCA에도 그러할 것이다.

오늘 서울YMCA의 역사적인 100차 총회에 참석한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활동하며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YMCA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선언한다.

- 금번 100차 총회 이후, 서울YMCA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선거, 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서울YMCA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성 차별적인 요인을 찾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하는 운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성 회원들의 실질적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실천하며, 실무조직에서의 차별 해소, 여성지도력 육성 등 과제를 추진한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일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다.

2003. 2. 22

서울YMCA 제 100차 총회 회원 일동

2) 위의 결의문은 100차 총회장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에게 배포되었고 서울YMCA 기관지인 '청년' 2003년 2월호에도 실렸습니다.

【별첨】

서울YMCA는 여성회원에게 참정권을 즉각 부여해야 합니다.

서울YMCA는 60%가 넘는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즉각 부여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본 권리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회원들의 참여와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결사체 조직에서부터 소액주주의 기업경영참여라는 영리 추구 기업에까지 확장되어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기본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는 전체 회비납부 회원의 60% 이상이 여성이며 현장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90% 이상이 여성회원인데도 전국 63개 YMCA 중 여성회원의 총회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YMCA 제37차 전국대회 결의문에서도 서울YMCA의 여성회원 총회원권 배제사태를 성차별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YMCA 여성정책특위까지 발족하여 여성회원의 권리회복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성평등 조직문화 가꾸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시민운동을 함께 해온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서울YMCA의 빈인권적·반여성적 조직운영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MCA는 여성들이 집 밖을 나오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던 시대에 YMCA 행사에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이 땅에 민주주의 이념이 도입되기도 전부터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 오며 1세기가 넘는 장구한 역사의 굵이굵이마다 늘 새로운 시대정신을 앞세우며 이를 시민사회에 널리 심는 사회변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무엇보다 YMCA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성회원의 참여와 지도력을 내세우며 지역사회운동을 대중들과 함께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YMCA가 여성회원에게 총회원권을 배제한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이념이라고 하기에 드문 '성평등 이념'을 무시한 처사이며 조직운영의 근간이 되어야 할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구조에의 참여라는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서울YMCA가 지난 100여년동안 선도해온 새로운 시대정신을 살려 여성회원들에게 즉각 총회원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4. 9. 23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서울YMCA는 그 헌장 어디에도 회원이나 총회원의 자격에 남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창설 이래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동등하게 일반회원으로 사회의 발전과 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헌신하여 왔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열성적으로 일해 온 결과, 여성회원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 많은 대내외 활동들을 여성회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는 단지 여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성회원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YMCA가 지금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성회원에게 대부분 권한을 인정하는 것에 비하면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은 세계기독교청년회나 다른 나라의 YMCA는 물론이고 국내의 어느 지역YMCA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다.

서울YMCA의 헌장, 제100차 총회결의문, 2004. 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YMCA 전국대회와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회 권고 및 수차례에 걸친 여성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는 여성회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으며, 결국 여성회원들이 단 한차례도 총회원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오지 못한 채, 2005년 102차 정기총회가 임박하게 되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인권특별위원회는 서울YMCA의 정신과 헌장,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1월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복지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진선미)

강금실, 김이경, 김성희, 김수정, 김영희, 김외숙, 김은지, 김연숙, 김진, 김태선, 노희정, 문건영, 박순덕, 박정혜, 박주현, 배성희, 소라미, 손난주, 손영숙, 왕미영, 원인경, 위은진, 어동주, 이미려, 이상희, 이소영, 이윤희, 이정희, 이지선, 임선영, 전현희, 정남순, 정수연, 정연순, 정은숙, 조숙현, 진선미, 최은순, 최일숙 (총 39명)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삼종 이선종 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한국법정신문 3층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참여연대 (정책실 연대담당: 양영미 기사 (직통전화) 723-4250 (전자우편) yang@ppd.org)

제목: 서울YMCA의 성차별적 인권침해 시정을 촉구한다 (2004. 10. 8. (총 1 쪽))

성명

서울 YMCA는 여성회원 참정권을 보장하라

참정권요구 정계방침은 철회되어야

1. 서울 YMCA는 회원의 과반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참석과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회원들에 대한 정계 방침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여연대는 서울 YMCA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2. 여성에 대한 참정권은 한 세기 전부터 국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다. 한국은 84년 UN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남녀평등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운동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분야로 사회의 어느 분야보다도 차별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서울 YMCA의 여성회원들의 참정권요구에 대한 정계방침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사회운동단체로서 자기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다.

서울 YMCA는 지난 1903년 설립 이래 한국사회에서 다양하고도 중요한 운동을 주도해왔다. 특히 서울 YMCA는 유권자운동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주장해왔고, 정치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공평하고도 투명한 행사를 주장하는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회원의 과반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어울배반이고 자가당착이다.

3.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YMCA에 대하여 여성의 총회참석제한 등의 성차별은 평등권 침해로 규정,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 YMCA가 지난 세기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회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전근대적인 여성회원 참정권배제 규정을 조속히 시정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서울YMCA 여성회원참정권 쟁취를 위한 지지의견서”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는 지난 1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2월 26일 열릴 102차 총회의 참석명단을 확정했으나 여성회원은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여성회원 참정권’을 요구해 왔던 서울YMCA 여성회원들과 ‘서울YMCA 성차별 철폐 회원연대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서울YMCA 이사진은 총회결의문, YMCA연맹의 권고,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 여성회원들의 요구, 여론의 지탄이 모든 것을 안하무인격 행태로 버릴 만큼 대단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체회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게 회원으로써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이사회는 시대착오적 결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YMCA 여성회원들의 투쟁에 지지의 뜻을 밝힌다

서울YMCA의 여성회원 참정권 문제는 단순한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단체 또한 이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때 한국근대시민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YMCA의 정체성을 의심케하는 일이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의식, 평등문화에 앞장서야 하는 단체의 결정이기에 그 사회적 책임을 논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는 여성으로써의 출발점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한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정치가 사회, 정치적으로 미연되며 양성평등적 사회를 향해 한걸음씩 나가고 있다. 서울YMCA 이사회는 현실의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여 빠른 시일내 여성회원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05. 2. 4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조 현 옥

2004년 2월 25일 한국YMCA 권석혁(AOS) 성명서

서울YMCA 100차 총회 결의 준수를 촉구합니다

전국의 YMCA 운동 동역자들은 지난 1년 6개월간의 서울YMCA 개혁운동 과정을 지켜보며 하루 빨리 과거 및 년 동안의 갈등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하여 한국 YMCA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국 동역자의 한결같은 기원에 맞추어 서울 YMCA 100차 총회를 통해 3개 특별위원회(여성, 개혁, 헌장) 설치와 ‘여성회원의 참정권인정’을 포함한 서울YMCA 여성결의문 채택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간의 서울YMCA가 겪었던 내부 개혁의 진통을 YMCA운동이 거듭나는 계기로 승화되고 한국YMCA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YMCA 2만 회원과 실무자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모범적인 개혁과정이 진행 될 것이라는 기대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 제101차 서울YMCA 총회를 앞두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서울YMCA 개혁과정에 희망을 걸고 지켜보았던 전국 10만 명의 회원들과 2000여명의 실무자들의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YMCA 100차 총회에서는 여성 총회원권 인정을 전제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YMCA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개혁과정의 진통이 한창 일 당시 서울YMCA 이사회가 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된 ‘이사회 특별위원회’와 ‘서울YMCA개혁재건회의’ 회원들과 협의를 통해 내용과 문안이 작성되었고, 당시 이사장의 확인까지 거쳐 총회당일 총회자료와 함께 총회 참석회원들에게 배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문의 합의와는 달리 여성들의 총회권, 투표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간의 일련의 소식이나 법적인 요구 것은

첫째 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구조로 갖고 있는 한국YMCA 기권현장과 회원총회 진통 즉 기본 정신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둘째 결의한 사안을 번복하여 일반의 상식을 거스리는, 결코 납득될 수 없는 사안

이 이루어짐으로 YMCA 자체 심각한 자기모순을 표출하는 행위이며,

셋째 여성참정권의 사회적인 확대나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구태는 그 결정에 함께한 사람들이 과연 현대인이냐는 의구심마저들게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국 60지역 YMCA의 회원과 운동 동역자들로서 결코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서울 YMCA 회원, 이사회와 실무자들 모두가 자기조직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 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전국 YMCA 회원들에게 심대한 어려움을 맞게하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즉각 시정하여 100차 총회의 결의 사항 준수하여 여성참정권이 보장된 101차 총회가 100년 한국YMCA 운동의 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2004년 2월 25일

한국YMCA 간사회(AOS)

서울YMCA의 여성회원 총회 배제 및 "남성단체" 표명에 대한 한국YMCA 실무자의 입장

지난 2월 26일 진행된 서울YMCA 102차 총회는 또다시 여성회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이는 1967년 "남자"에서 "사람"으로 개정한 서울YMCA 헌장을 위반하고, 자기 총회부터는 여성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기로 한 지난 100차 총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한 처사였다.

또한 102차 총회에서 실시한 남성회원들만의 "여성의 총회참여인정에 관한 찬반투표"와 부결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난센스이며, 낯부끄러운 사건이며 동시에, 스스로 남성만의 단체라고 주장하는 서울YMCA에 대해 전국YMCA의 실무자들이 서울YMCA를 같은 목적문에 따라 하나뿐 아니라 운동을 하는 우리의 동역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게다가 이사회 위원들은 각종 언론매체에서 "YMCA는 남성단체"라고 공식적으로 발언(KBS 2 TV 시사부나잇 2006. 2. 28 방송)함으로써, "우리로 다 하나되게 하소서(요한복음 17장 21절)"라는 YMCA 정신과 이념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전국 의 모든 동역자들이 지역현장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YMCA 운동을 지지하는 전국의 많은 회원들의 걱정과 비난을 사기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여성회원들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YMCA는 서울YMCA가 유일하다. 이미 제37차 전국대회, 전국연맹이사회, 전국YMCA 간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헌장을 위반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상식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시민사회가 서울YMC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와 희망에 대한 기만일 뿐 아니라 전세계 도처, 전국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역자들과 회원들에게 일말의 배려와 일체감도 가지지 못하고, 서울YMCA를 이사회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서울YMCA 102차 총회결과를 지켜본 전국YMCA 실무자들은 이제 서울YMCA가 서울YMCA 이사회와 남성회원들만의 것이 아님을 선포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YMCA가 이제라도 "여성"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성회원의 총회위원권을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YMCA는 목적문에 따라 함께 일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YMCA에 대한 일체감 회복과 상호존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회개하며, '운동성 회복'으로 이 부끄러운 사태를 종결짓기를 바란다.

서울YMCA가 진정으로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전국의 동역자들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06. 3. 3

거창: 박종관(사무총장), 김홍섭, 김동선, 하동근, 김지영, 김희숙, 정선희, 백혜영, 함미숙

광양: 김정은, 박치현, 김상철, 김정옥, 최지선, 배화진, 강경숙, 김정아, 김세영,

김미화, 최영희

광주: 이상정(사무총장) 안평환 이창재 박을숙 윤봉란 정희춘 천재정 이운기 김현 한송희 박명일 김진환 박수미 이희정 송수희 김미진 민수라 고효진 최병남 윤선미 김수진 (공산지회) 김호림 최경아 이재웅 양수임 재지선 전종아 여인호 이상옥 윤혜련 김하정 (서구지회) 분기전 김원규 장합샘 정종인 김세화 박석표 최화영 임진숙 김경석 이진원 정창 안송희 이은선 박남희 최영은 김진선 손영생 이현희 이재현 이현옥 이철현 이영옥 김현옥 정은화 김경옥 김태완 조영곤 김경화 문신정 (화정복지센터) 선운홍 임내규 (하남센터) 박상희 국성경 박주연 류아람 허인성 황정화 이혜림 신미애 김연 유은미 장만중 서석민 (서구자원봉사센터) 이훈규 (연수) 노훈오

구리: 문승원(부총장), 정이재, 방선영, 민억식, 이봉진, 박민수, 박유미, 박민경

구미: 이동식, 최현옥, 이선정, 배선옥, 박정주, 안명순, 이은경, 이현순

군포: 박은호, 두천균, 조미림, 이우현, 서정배, 김유경, 이경민

군산: 정건희, 정미형

김해: 김용국, 최현경, 조상환, 정현주, 이화정, 최세나, 이정옥, 한상환, 오정대, 이창선, 이선옥, 김수정, 조강춘, 이재원, 김영진, 최정인, 김선희, 강태현, 이주희, 김현주, 안경진 김진환, 조정미

남양주: 조정현, 이재명

대구: 이창건, 손병근, 감영일, 백경록, 최남철, 장신영, 이수경, 김지영, 심희열, 임명숙, 김경민

대전: 이충재(사무총장), 이주봉, 김종남, 이상재, 김갑동, 황성미, 정은영, 오기자, 추명구, 박은숙, 유경희, 산옥경, 전경미, 서현희, 이호, 최혜란, 백경록, 박현정, 장정희, 유수진, 조보아, 조혜경, 한은숙, 이은경, 이혜진, 박은미

마산: 차윤재(사무총장), 김영미, 김막달, 이지양, 김양희, 안지혜, 조정림, 윤상현, 박병준, 이윤기, 김희빈, 이지은, 안현정, 조미란, 서혜진, 허은미

문경: 김세영

부산: 김현정, 윤경선, 김수현, 최선미, 김은아, 이미영, 안주현, 김미영, 최은진, 심지은, 이난주, 정경애, 권춘화, 김정아, 오승희, 강영선, 김현진, 유은정, 최인영, 변정은, 장계홍, 이우중, 전영현, 정혜림, 김성숙, 최민경, 허정은, 박은희, 백은정, 임연주, 김승미, 윤정윤, 강혜영, 양미영, 송혜림, 유지영, 박연경, 정명주, 김민수, 이윤숙, 장명균, 김현숙, 김선임, 박미리, 안나영, 강승희, 김인숙, 윤혜림, 송영옥, 유성지, 박정왕, 강경희, 박은옥, 이미화, 정수현, 황재문, 옥성희, 김숙경, 홍은숙

성남: 장창현

속초: 김원범(사무총장), 김효순, 김경숙, 김선하, 김기덕, 이달성, 이석호, 박명애, 권태영, 조철근, 복미나, 김한숙

순천: 박두규(사무총장), 홍순관, 신일숙, 고상연, 김명구, 이금순, 임미혜, 김석, 양동화, 윤정미, 류선영, 김은순, 김진영, 김정화, 박재형, 김선숙, 박진아, 한선주, 김유진, 오옥선, 차지은, 선보경, 한현경, 나희영, 안상미, 강옥자, 김미희, 류가희, 이윤식, 김준규, 비희완, 조대용, 김필열, 신창호, 감영택, 차영애, 서동숙

수원: 황용원(사무총장), 김호철, 이상명, 이미선, 김성연, 서정근, 조원식, 이광희, 정동근, 장미라, 김현미, 서소영, 심은민, 손은혜, 홍명옥, 신희정, 한경실, 김지은, 감금란, 라영식, 이소영

시흥: 이환열(사무총장), 김상신, 감석환, 서미, 윤나람, 조혜영, 기보영, 박정자, 김수경, 이향숙, 이영주, 김은엽, 김지연, 이은주

울산: 전효영(사무총장), 박현정, 이선미, 이주영, 정규화, 조희용, 박영숙, 이현숙, 박종태, 이영숙, 김정애, 권오남, 김지윤, 김화수, 정미경, 이미옥, 김창열, 강상범, 안신옥, 황태옥, 김선희, 이진영, 문명경, 임문걸, 김성복, 이미애, 정인숙, 이진희, 최정현, 박성훈, 김성진, 정수자, 김민정, 차현아, 이희자, 강춘선, 김란주, 김경애, 김은주, 박진희 김선희, 정미정, 박주영, 정효진, 권순성, 김용호

여수: 이상훈(사무총장), 김대희, 박영란, 김일주, 장혜옥

영주: 구화자(사무총장)

안동: 박장동(사무총장) 김서구, 윤미래, 박정열, 정재현, 임태식, 김은미, 권남영, 손정희, 류지현, 박현숙

안산: 이근석(사무총장) 이사순, 조지연, 이혜주, 박지혜, 임은아, 신지은, 박성희, 김종숙, 송현식, 강나경, 송미경, 이지현, 박미경, 엄홍서, 전미영, 한승희, 신남균, 차혜선, 류홍빈

원주: 김영하(사무총장), 경수현, 이현주, 이근정, 신일용, 박선희, 김익수, 최두환, 민광홍, 최은영, 민병남, 김광석, 최영애, 정현희, 정해경, 김상희, 박영옥, 정혜연, 김영주

아산: 박진용(사무총장), 오귀복, 박기남, 류정수

안양: 문홍빈(사무총장), 이필구, 이현주, 심춘연, 김유철, 강주영, 송수경, 박성애, 김명희, 서명숙, 이정은, 남정아, 최정아, 양지연, 김지희, 김성미, 신영애, 조영란, 신수영, 김수정, 박은혜

이천: 홍경표(사무총장), 남상오, 차현숙, 이미경, 오복실, 이우경, 이은희, 최창균, 안현, 서영자

진주: 김일식(사무총장), 권일식, 김성화, 김연자, 김영임, 박미연, 박우현, 박정남, 박혜경, 안종필, 안혜진, 이순영, 이유진, 이인숙, 이종훈, 장윤정, 정지은, 최영, 최영림, 최윤미, 허라중

제주: 김태성(사무총장), 송규진, 임애자, 황태영, 부재필, 김경자, 김희진, 양유순, 안효실, 이정애, 강영아, 이혜진, 오준협, 김태건, 이영무, 허성봉, 고준화, 고

순열, 강윤정

참원: 전점석(사무총장), 유현석, 지종근, 유은영, 안민화, 안은희, 전미애, 황부진, 박나리

청안: 천진옥(사무총장), 김우수, 김기선, 김인경, 김지선, 이연희, 이명덕, 김안순, 김순영, 이은경, 조혜숙, 김세원, 김신애, 김세진, 이호섭, 심상문,

청주: 강영일(사무총장), 차문진, 주건일, 우광민, 김정애, 서영희, 유희종, 서정순, 조성하, 손미순, 박상명, 서언주, 김순영, 김명신, 안지영, 조은영, 전유정, 이지현, 이준희, 김홍성, 김병수, 이진형, 문정희, 문숙희, 김은서, 박경은, 유희정, 양진영, 김진영, 전정아, 조경희, 김은혜, 김진숙, 류기수, 홍혜순, 강옥자, 이기순, 최광희, 김영태

춘천: 신덕진(사무총장), 장미희, 남궁재정, 신호승, 이숙영, 이규영, 박태수, 이원영, 최은정, 차명신, 최옥윤, 함영숙, 홍진경, 안소영, 박정숙, 유진상, 최소연, 유진상, 이상빈, 고일영, 전종미

평택: 허용림, 손유진

하남: 안창도(사무총장), 오근영, 조정연

홍성: 김오열(사무총장), 김택수

전국연맹: 이학영(사무총장), 남부원, 송진호, 전성환, 권연주, 임은경, 김길성, 박민아, 최재옥, 김도환, 조여호, 김무경, 이승현, 이해정, 김영희

서울YMCA 여성참정권 문제에 참당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서울YMCA 제102차 총회와 여성참정권 부여를 위한 현장개정여부를 묻는 투표결과에 대해 우리들은 참당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서울YMCA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정권은 기독교총회의 정제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 할 성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차별이 있는 곳을 찾아가 평등실현에 힘써야 할 YMCA가 스스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YMCA 운동에 몰입하고 있는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미 서울YMCA를 제외하고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모든 YMCA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YMCA 안팎에서 서울YMCA 이사회를 향해 여성참정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여성참정권은 21세기 YMCA운동의 상식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일반화된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서울YMCA만 유독 남녀차별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차별받아온 여성회원과 실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YMCA 이사회가 이번 총회에서 밝힌 설명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합당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YMCA 이사회는 "본회가 남성단체라는 정체성, 100여 년간 남성에게만 총회참정권을 인정해 온 점, 현장개정 사안이라는 점" 등을 여성참정권 불인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YMCA가 남성단체라는 주장은 YMCA 운동정신 곳곳에 암울리원칙 1조를 뜯지 않아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어느 YMCA의 실무자와 회원도 YMCA는 남성단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회원과 실무자가 있다면 그는 YMCA 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직각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00여 년간 서울YMCA가 남성에게만 총회참정권을 인정해 온 것도 전통으로 내세우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서울YMCA가 스스로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사회의 발전보다 뒤처져있음을 고백하는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YMCA 간사와 실무자, 전국YM연맹 이사회, 여성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참정권 인정을 촉구하고 권고하였으나 서울YMCA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현장과 규정을 위반하며 여성참정권 부여를 위한 현장개정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라는 변칙을 동원했다.

우리는 항상 회원들과 함께하며 매일매일 여성회원과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을 만나야 한다. 서울YMCA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 회원과 청소년 회원들을 지도할 것이며, 무슨 변명으로 여성회원들과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서울YMCA에서 여성참정권이 즉시 실현되도록 이사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과 실무 책임자인 강태현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여성참정권의 즉시 실현만이 서울YMCA가 YMCA운동의 기본을 지키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우리 실무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국 의 동역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5. 3. 4

서울YMCA 실무자 일동

강혁, 김미옥, 김은주, 김정아, 김경지현, 김종남, 김지영, 김현주, 김희경, 민태식, 박금복, 박영은, 박현아, 변미혜, 서영경, 안수경, 왕광희, 윤창수, 윤호중, 이명기, 이명희, 이미혜, 이연희, 이복희, 이은경, 이정민, 이종민, 이혜경, 임송미, 조율민, 최소향, 최은영(이상 가나다순)

서울YMCA의 정의로운 변화를 열망하며 관습에 도전하는 슬로브랫의 딸들¹⁾이 기자회견회를 하며...

지난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권고, 제 37차 한국YMCA 전국대회와 영호남 YMCA의 유지지도자 협의회와 권고, 한국YMCA 이사회와 권고와 방문, 여성 및 시민단체의 연대서명운동과 성명서 발표 등이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아직 까지도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

서울YMCA 현재 이사장(박우승 남산교회 장로, 한울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몇몇이사진들 만이 YMCA의 Men을 사랑이 아닌 남자로 해석하고, 지난 100여년간의 관행을 핑계로 현상 상 보장되어있는 여성회원들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서울YMCA를 기독교성과 민주성, 시민성, 청년성을 지닌 기독교사회 운동단체라 할 수 있겠는가?

서울YMCA는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로서 설립 초기부터 남녀노소, 양반과 평민이 차별없이 참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 민족독립운동, 그 시퍼런 군사독재치하에서도 빼앗긴 민주 사회와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였던 단체였다. 그러나 표용은 체제 이후 현재 박우승체제로 이어져 서울YMCA가 소수자들에 의해 사유화되고 권력화되어 가면서 기독교 사회운동보다는 자기 몫집 부풀리기엔 여념이 없어 본연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여성참정권의 문제는 단순히 총회 참석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여성회원들의 권리와 생존에 관한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현재 늪에 빠져 있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서울YMCA를 초기 기독교 사회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회원성, 청년성, 민주성을 살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개혁운동과 맞닿아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YMCA의 모습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집단, 정의와 편파를 위한 여류여니갈 기독교운동체와 가부장적인 관행이 공존한 가성교단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출된 사회문제임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

1) 구약성서(민수기 27장과 36장, 여호수아 17장)에 나오는 슬로브랫(Zelophehad)의 딸들은 당시 남성에게만 땅을 나눠주기로 되어 있는 상속법에 용기를 갖고 맞서므로서 당당히 권리를 찾고 변화를 이끈 여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YMCA 여성참정권 확보 운동'은 서울YMCA 조직내부만의 문제가 아니요, 한국YMCA 전체의 문제이며 한국사회 가부장 문화의 벽을 열고 성평등과 민주적인 사회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임을 밝힌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은 무엇보다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지수이며, 여성성과 여성의 삶의 경험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요청되고 있는 이때에 여성회원의 60%, 자원봉사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서울YMCA가 여성과 협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 커녕 정의롭지 못한 폭력과 성차별 등 불법적인 행위로 일관하여, 고통받는 우리 여성회원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이에 서울YMCA 성차별철폐를 위한 회원연대위원회는 이번 102차 서울YMCA 총회를 앞두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고 관습에 도전하는 슬로브랫의 딸들처럼 용기를 내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싸워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첫째, 102차 총회에서 총회위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서울YMCA 현장, 100차 총회의 결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각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성회원을 총회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YMCA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서울YMCA내 뿐만 아니라 전국YMCA, 교계, 방여성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운동 단체등 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서울YMCA 여성참정권 부여를 위한 촛불기도회, 1인시위, 박우승 이사장 학교방문 시위등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온갖 회원활동 수단을 동원 할 것이다.

셋째, 지난 3년간 꾸준히 여성회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절차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박우승 이사장을 비롯한 현재 서울YMCA 이사진들 개개인을 성차별 결집을 당사자로서 그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해 갈 것이다.

넷째, 102차 총회에서 조차 서울YMCA 여성회원의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한국YMCA 연맹의 여성특별위원회, 전국YMCA 회원과 간사 등의 세력을 결집하여 서울YMCA를 전국YMCA 그리고 세계YMCA에서 제명시키는등의 운동까지도 전개해 갈 것이다.

2005. 1. 10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회의
위원장 김성희 · 이석형

법원의 '절차이행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3일 서울YMCA에서 10년 이상 활동을 해 온 여성회원 11명이 "오는 26일 열리는 102차 정기 총회 구성원으로 임시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YMCA를 상대로 낸 '절차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러한 이태운 부장판사의 결정은 시대 착오적인 성차별적 관행을 묵인하는 처사로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사회적 약자로서 인권을 짓밟힌 서울YMCA 여성회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앞에 무력하여 정의를 되찾고자 호소한 법원마저 시대적 상식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렇다.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서울YMCA 현장은 위험적이지 않다. 즉 서울YMCA 현장11조에서는 서울YMCA 총회원의 자격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이지 않다. 이 현장은 역사적으로 소멸되었듯이 1967년 '남자'에서 '사람'으로 바꿨다.

그렇다면 현장개정 필요없이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되는 것이다. 서울YMCA 현장과 회원규정에 의하면 총회 구성원은 20세 이상 기독교인으로 2년 이상 활동해 온 회원 가운데 회원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길게는 15년 전부터 짧게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서울YMCA 회원위원회와 이사회에 2년이상 활동을 증명하는 회원증과 세례증명서를 제출하여 남성과 동등하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를 해왔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100차 총회에서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줄 것을 결의한 이후에도 위험적 요소가 없는 현장마저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연하고 묵살해 오고 있다.

법원이 지극히 성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이며 형식적 잣대를 드리대는 오류를 범한 것은 바로 서울YMCA 규정에 의한 회원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심의에 대한 재량권에 대한 것이다.

이 과정은 서울YMCA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지극히 형식적인 과정이다. 남성회원의 경우 회비를 2년이상 냈는가와 세례증명서만을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회원활동여부와 관계 없이 총회원명부에 오르게 된다.

이와같이 형식적인 재량권만을 왜 여성회원들에게는 실질적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하는가? 이것이 성차별이지 않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11명의 회원이 서울YMCA 회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소명할 수 없다고 표현한 부분이다.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10년이상 서울YMCA에서 자원봉사자로, 모범회원으로 표창까지 받고 각종 단위에서 활동한 회원만을 엄선하여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울YMCA내 각종 활동 내용 증명까지 첨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회원인지 소명할 수 없다니!! 무슨게도 서울YMCA에서는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총회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 수가 1년에 한 번 총회장에만 온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반시민의 상식수준에도 못미치는 판결을 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여성회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 준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향후 우리는 곧바로 서울YMCA 여성회원 총회원권 인정을 위한 본안 소송에 돌입하여 법정투쟁을 할 것이며 동시에 성차별적이지 않은 현장을 준수하지 않고 여성회원들의 인권을 유린한 회원위원회와 이사회 이사 개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할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건대 2월26일에 열리는 서울YMCA 102차 총회에서 현장개정을 진재로한 남성회원들만의 과반수 투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
위원장 김 성 희 이 석 행**

현장마저 뒤집고 성차별 행위 자행하는 서울YMCA 102차 총회 전면 반대한다!!

우리는 금년 2월26일에 열리는 서울YMCA 102차 총회에 또다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대받지 못했다.

서울YMCA 이사회가 그간 수년간 여성회원들이 요청해 온 여성 참정권을 금년에 있을 102차 총회 뿐만 아니라 차년도 총회에도 참여 할 수 없게 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여성회원 참정권 배제는 한국 어느 지역YMCA, 세계YMCA에서 유례없는 유일한 일이다. 더구나 서울YMCA 여성회원들은 길게는 15년 전부터 풀게는 최근 3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국YMCA 전국연맹 전국대회 권고문, 지방YMCA 지도자, 전국YMCA 간사회의, 한국YMCA 연맹 이사단의 권고등 YMCA 내부의 움직임은 물론 대 사회적으로 시민, 여성 단체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사례로 시정 권고까지 받기에 이르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 이사회는 이번 102차 총회를 앞둔 정기 이사회에서 '금년 2월에 있을 102차 정기총회에서 기존의 총회원(남성)들에게 여성회원 총회원권 부여 여부를 이사, 감사 선거시 동시 투표하여 과반수가 넘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현장개정 절차를 밟아 추진한다'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서울YMCA 현장 제12조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0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 마저 짓밟은 명백한 비민주적 불법행위이다. 이사회회의는 '현장' 그리고 회원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회원의 참정권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그들의 파렴치한 입장을 시간 끌기 작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에 의하면 금년 102차 총회는 물론이요 103차 총회에서도 여성회원 참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차년도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현장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여성회원 총회원권 부여 문제에 대한 아무런 기약과 보장이 되지 않는다.

서울YMCA 이사회회의는 이미 작년 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100차 총회의 결의문 채택마저도 재밋대로 해석하고 뒤집는 집단이다. 이러한 마당에 102차 총회의 과반수

투표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던 말인가?

백배양보하여 저들이 진정으로 여성회원의 총회원권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장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표행위 자체가 필요없고 더욱이 현장개정 사안이 아니라 총회장에서 안전으로 처리만 해도 충분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12월 박우승 이사장은 한국YMCA 연맹 이사 대표단에게 금년 102차 총회에서 현장개정안에 포함시키면 2/3를 넘어야 하므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여성회원 참정권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총회에서 그것도 남성들만 참여하는 자리에서 현장개정의 과정을 또 거치겠다니!! 책임적 자리에 있는 이사장, 여고 교장이며 한 교회의 장로인 자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던 말인가?

이번 총회는 서울YMCA 이사회가 집단적으로 명백한 불법적인 결과로 치르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이며 비윤리적으로 여성회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기독교사회운동,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조직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역사에 뒤돌릴 수 없는 명명백백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이에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회의는 이번 이사회회의 결정이 여성회원의 인권을 유린한 성차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본래의 기독교사회운동과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일부 이사진들에 의해 독점화 되고 관료화 되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YMCA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와 맞닿아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불법행위, 비민주적, 비윤리적 행위 자행하는 서울YMCA 이사진은 전면 사회하라!!
- 현장마저 뒤집는 이사회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102차 총회는 명백한 비민주적 불법 총회로 102차 총회 전면 반대한다!!

우리는 2월26일 102차 총회가 불법으로 치러지는 한 세계YMCA와 한국YMCA에 서울YMCA 제명 요청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서울YMCA가 기독교사회운동단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성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성차별철폐회원연대회의'는 서울YMCA 남성회원은 물론 전 시민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해 매진할 것이다.

2005. 2. 18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
위원장 김 성 희 이 석 행

남성 총회원 만에 의한 투표회부 부결처리는 서울YMCA 이사회의 자작극이다!

지난 2월 26일 서울YMCA 제102차 총회에서는 오전부터 남성회원들에게만 여성참정권 부여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대로 부결되었다.

우리는 제102차 총회를 지켜보며 서울YMCA 이사회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애초부터 여성회원의 정당한 참여 요구를 묵살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기에 급급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찾아왔던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2003년 제100차 총회는 서울YMCA 차기 총회에서는 여성회원이 남성회원과 동등하게 모든 활동에 함께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를 중심으로 "서울 YMCA는 '남자' 기독교청년회로서 한형 한정의 '사람'은 '남성'이다. 여성에게 총회원권을 주면 단체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또는 현장을 개장해야 한다" 등의 궤변이 유포되었다. 남성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봉고된 투표안내문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YMCA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궤변과 형식논리를 앞세워 현장 개장정자를 받아 총회원권을 여성에게도 부여하겠다고 변명을 해왔다. 전국Y의 간사와 실무자들이, 전국Y연맹 이사회와 여성특별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참정권 인정을 촉구하거나 권장할 때마다 이사회는 영무채처럼 같은 말을 되뇌어왔다.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여성참정권 부여를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한 밤에 불 보듯 뻔히 보이는 유치한 자작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사회와 유치한 자작극은 제102차 총회 현장에서 쉽게 확인된다. 여성참여 없이 남성들만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이사장과 준비된 총회문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현장개정안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박수로 통과시켰다. 여성참정권 부여를 위해 현장을 개장하자는 부의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하루 종일 열렬히 처리하면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현장개정안은 간단히 박수로 가결하였다.

이사장과 이사회가 눈곱만큼의 의지만 있었어도 여성참정권은 총회의 결의로 즉시 가능하다. 아니 실제로 지난 제100차 총회는 바로 그 결의를 했던 것이며 서울YMCA 여성참정권 인정을 위해서 현장개정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한형 한정에 따라 2년 이상의 보통회원이고 세례증명서를 제출한 여성들에게 이사회가 심의하는 절차로 참정권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와 합의를 선택하지 않고 아집과 독단을 선택했다.

우리는 제102차 총회를 계기로 서울YMCA 이사회가 시대착오를 넘어 시대역행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는 사회발전의 장애물임을 선언한다. 자신을 생명의 모태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성을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 서울YMCA 이사장과 이사회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요 소름이 아니라 공포이다.

또한 우리는 이사장과 이사회와 유치한 자작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여성참정권 사안이 현장개정이 필요하느니 회원의 의사가 어떻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지 말라.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차별 단체인 서울YMCA에서 성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참정권이 인정돼 이 단체가 빛과 소름으로 거듭나는 날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투쟁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우리는 서울YMCA 여성참정권 확보운동이 서울YMCA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우리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위원회'는 서울YMCA 회원과 실무자 뿐 아니라 전국의 회원과 실무자, 여러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와 빛나는 양심들과 함께 서울YMCA 여성참정권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 싸움은 서울YMCA에서 어둠과 공포가 사라지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YMCA 전국연맹과 세계YMCA 연맹에서 서울YMCA 제명, 여성참정권 인정을 위한 본안소송 돌입,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는 서울YMCA 이사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사회적 압력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양자와 소수자가 압박받는 차별문화를 바꾸어 평등과 인권을 실현시키는 일에도 빠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시민사회단체, 교계 및 국제적 인권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5. 2. 28.

서울YMCA 성차별철폐 회원연대
위원장 김 성 희 이 석 행

서울YMCA의 공공시설위탁·공공보조금 지원 반대 운동을 전개하며

우리는 서울YMCA가 시민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믿음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평등의 권리조차 부정하고, 민간단체로서의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의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단체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YMCA가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청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YMCA운동의 본질과 사명에 연관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회와 전국YMCA가 서울YMCA의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 서 줄 것도 재차 촉구하여왔다.

그러나 YMCA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주장과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YMCA는 여성회원을 배제한 채 불법적인 총회를 자행하는가 하면 불법비자금사건 의혹으로 불려났던 표용은 전이사장을 다시 서울YMCA에 복귀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서울YMCA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조차 비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민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일이며, 이러한 단체에게 국가의 공공사무를 위탁하고, 시민의 혈세를 각종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YMCA의 회원정책이 성차별적임을 지적하고 이에 해결을 권고한 바 있고, 최근 국회의원 83명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는 단체에 국가의 공공사무위탁이나 공공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공공적 한의정신에 따라 우선적으로 서울YMCA의 시설위탁 및 공공보조금 지급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뜻을 서울시의 시설 재위탁 문제가 걸려 있는 양천구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으나 서울시행정의 관계자들은 관련 조례 등의 형식적 논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처할 경우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감사청구와 행정절차 문제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둔다.

우리는 서울YMCA가 시민사회단체로서 최소한의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차별 등 일반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서울YMCA의 재반 공공시설 위탁 및 공공 보조금 지원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중단하도록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7월 1일

서울YMCA 성차별절제 회원연대회의

강세형, 강주현, 강희숙, 고윤철, 고정애, 고혜양, 권금상, 권명상, 권민정, 권연주, 김가순, 김경호, 김광식, 김광욱, 김난희, 김명선, 김민주, 김문수, 김선기, 김성림, 김성희, 김승욱, 김오열, 김영신, 김유임, 김유현, 김은정, 김재구, 김태수, 김태인, 김찬호, 김홍일, 김홍진, 김학봉, 남기웅, 남정순, 노성주, 두정효, 류수욱, 류경자, 문승원, 박봉희, 박재창, 박진용, 박상수, 박법근, 박해진, 박세영, 박귀태, 박문빈, 박윤애, 변용재, 백윤경, 배경미, 백수정, 백미숙, 손수정, 신일선, 신경희, 서미경, 신은실, 심의장, 서미화, 신용원, 신정범, 심기석, 엄홍석, 오세현, 우현숙, 유재준, 유종일, 윤영, 이해연, 이기윤, 이두형, 이경재, 이대수, 이수민, 이윤희, 이석형, 이영희, 이정주, 이영식, 이영식, 이경란, 이윤덕, 이은숙, 이은승, 이승민, 이가진, 이충만, 이미혜, 이인원, 이현주, 이형, 임건국, 임성근, 윤치은, 연제현, 유홍빈, 윤동훈, 조항, 조윤성, 전용희, 장규식, 전미옥, 조윤숙, 주철, 정지영, 정석구, 전현숙, 최석인, 최낙초, 최지혜, 최희숙, 최의주, 최송아, 차정은, 최은숙, 한인철, 황진신, 황병한, 함동균 (이상 123명)